

(앞쪽)

제 호

건축물출입검사원증

사 진

3cm × 4cm

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
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
촬영한 것)

성명
기관명

60mm×90mm(청상지 120g/m²)

(뒤쪽)

건축물출입검사원증

소속/직급:

성명:

생년월일:

유효기간: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위 사람은 「건축법」 제87조 제1항에 따라
건축물·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
또는 시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.

의
의
의

국토교통부장관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
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
특별자치도지사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
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
2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

※ 연락처: